공 고

◉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11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   - 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   - ○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   - 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진인베스트먼트 (납부기한 : 2027년 1월 8일)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6. 10. 23. ~ 11. 5.(공고일로부터 14일)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   - ○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 - ○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   - ○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   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   (전화 : 062-457-1592, 팩스 : 062-457-1598 / E-mail : limsd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자

번호	대상자	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주식회사 진인베스트먼트	210111-0140625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길 14, 401호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	30,000,000	1522-2634	영업 홍보